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행정복지위원회)

김 포 시

목 차

■ 기획조정실

- 1. 예산법무과 3

■ 행정안전국

- 2. 재난안전과 9

■ 경제국

- 3. 일자리정책과 19

■ 복지국

- 4. 복지정책과 31
- 5. 생활보장과 35
- 6. 노인장애인과 41
- 7. 가족문화과 45
- 8. 아동보육과 51

■ 읍·면·동

- 9. 통진읍 61

기획조정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세입예산 사업설명서

회계구분	일반회계	부서명	예산법무과
기정액	383,640,236천원	요구액	9,060,638천원

□ 세입예산 요구

(단위 : 천원)

장·관·항·목 ◎부기명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증감 (B-A)	세입내용·산출내역·증감사유
		최종예산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지방교부세등	155,048,000	173,002,000	131,230,893	29,922,107	11,849,000	17,954,000	
지방교부세	155,048,000	173,002,000	131,230,893	29,922,107	11,849,000	17,954,000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155,048,000	173,002,000	131,230,893	29,922,107	11,849,000	17,954,000	· 세입내용 : 「지방교부세법」 제5조에 근거, 국세 증가에 따른 정부 추경예산 확정과 이에 연동한 교부세 증액 · 산출내역 : 경정(173,002,000천원)-기정(161,153,000천원) · 증감사유 : 보통교부세 증액 내시 반영
조정교부금등	139,494,000	141,681,000	137,042,603	7,750,397	-3,112,000	2,187,000	
시·군조정교부금등	139,494,000	141,681,000	137,042,603	7,750,397	-3,112,000	2,187,000	
시·군조정교부금등 /시·군일반조정교부금 ◎일반조정교부금	139,494,000	141,681,000	137,042,603	7,750,397	-3,112,000	2,187,000	· 세입내용 : 「지방재정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군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교부금 · 산출내역 : 경정(141,681,000천원)-기정(144,793,000천원) · 증감사유 : 일반조정교부금 감액 내시 반영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1,094,963	60,323,638	60,000,000	0	323,638	-771,325	
보전수입등	61,094,963	60,323,638	60,000,000	0	323,638	-771,325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61,094,963	59,847,003	60,000,000	0	-152,997	-1,247,960	· 세입내용 :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액을 제외한 금액 · 산출내역 : 경정(59,847,003천원)-기정(60,000,000천원) · 증감사유 :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603억) 중 일부가 신설된 지정재원잉여금으로 별도 구분·편성됨에 따라, 순세계 잉여금 반영액을 일부 감액 조정
잉여금 /지정재원잉여금 ◎지정재원잉여금	0	476,635	0	0	476,635	476,635	· 세입내용 : 2025회계연도 결산부터 순세계 잉여금 중 국·도·비보조금 불용액 및 특별교부세 등 사용목적이 특정된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정잉여금 세입 통계를 세분화 하고 지정재원잉여금을 신설 · 산출내역 : 순증 476,635천원 (특별교부세 363,855천원 + 특별조정교부금 112,780천원) · 증감사유 : 지정재원잉여금 세입예산 과목 신설에 따라 해당 재원을 반영

행정안전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재난안전과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지원 사업(성립전)

사업기간	2026. 3.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사우동 대광연립 등 4개소에 침수감지 알람장치 9대 설치		
사업목적	호우 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①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면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의2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51,000	28,000	0	13,000	15,000	-23,000	
국비		0				0	
도비	51,000	28,000		13,000	15,000	-23,0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지원 사업	401-01 시설비	· 반지하주택 침수감지 알람장치 : 1,000,000원 * 3대 · 지하차도 침수감지 알람장치 : 2,000,000원 * 6대 =	15,000	

□ 예산요구 사유

- 호우 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가 예상되는 장소에 침수감지 알람장치를 설치하여 인명 피해 예방
- 경기도 행정1부지사 지시사항으로 관내 반지하주택 및 지하차도에 설치 지시
[경기도 자연재난과-8204(2026. 3. 26.)호]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에서 지정한 거점에 추가 설치로 인한 예산 증액(4개소에 9대 추가 설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 도비 교부결정(경기도 자연재난과-8654, 8680(2026. 3. 31.)호)
- 2026. 4. : 성립 전 예산 편성
- 2026. 4. ~ 6. :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관내 지하차도 5개소에 침수감지 알람장치 16대 설치(35,053천원)
2025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및 공영주차장에 침수감지 알람장치 24대 설치(43,117천원)
2026	- 반지하주택, 지하차도, 공공시설에 침수감지 알람장치 13대 및 S/W 1대 발주 완료(28,000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3,000	35,053	-	7,947	
2025	51,000	43,117	-	7,883	
2026	28,000	-	-	28,000	4.24.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재난안전과	사업규모	4개소에 9대 설치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5,000
부기명 (세부사업)	침수감지 알람장치 설치 지원 사업	사업위치	사우동 412-1, 2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재난안전과	재난대응팀장 최태수	담당자	공업8급 허준용	전화	2917
-----	-------	------------	-----	----------	----	------

2026년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성립전)

사업기간	2026. 4. ~ 2026. 6.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빗물받이 정비 2,250m		
사업목적	주거지 및 법정도로 침수 예방과 주민 안전을 확보하여 주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제2항
	제3조(책무)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90,000	0	0	90,000	9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0,000			90,000	9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0	
2026년 여름철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401-01 시설비	. 통진읍 빗물받이 정비 : 40,000원 * 1,250m	= 50,000	
		. 월곶면 빗물받이 정비 : 40,000원 * 1,000m	= 40,000	

□ 예산요구 사유

- 국지성 호우 및 집중강우 증가로 기존 빗물받이 및 배수로의 통수단면 부족 및 퇴적토 적체 심화로 침수피해가 우려됨
- 주거지 및 법정도로 침수예방과 주민 안전의 확보를 위해 빗물받이 정비를 우기 전에 진행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예산법무과-4238(2026.03.30.)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2.09. : 빗물받이 정비사업 수요조사 실시
- 2026.02.13. : 빗물받이 정비사업(특별교부세) 신청
- 2026.03.30. : 특별교부세 교부
- 2026.04.15. : 성립전 예산 편성
- 2026.04.16. : 특별교부세 재배정(통진읍, 월곶면)
- 2026.04. ~ 06. : 우기 대비 빗물받이 정비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구분	총사업비(A+B+E)	기투자(A)	2026년 예산 소요액(B)				향후투자(F)	비고
			계(B=C+D+E)	본예산(C)	1회추경(D)	2회추경(E)		
계	90,000	0	0	0	0	90,000	0	
공정별	설계비	0	0	0				
	보상비	0	0	0				
	공사비	90,000		90,000		90,000		
	감리비	0		0				
	부대비	0		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해당없음
2025	· 6개 읍면(통진, 고촌, 양촌, 대곶, 월곶, 하성) 침수우려지역 관로 정비 완료
2026	· 통진읍, 월곶면 빗물받이 정비 예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90,000	-	-	90,000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재난안전과	재난대응팀장 최태수	담당자	시설7급 방현욱	전화	5493
-----	-------	------------	-----	----------	----	------

경제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일자리정책과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성립전)

사업기간	2026. 4.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노동권익센터(김포시 사우중로11번길9)	
사업규모	노동법률 상담·교육 및 권리구제 지원				
사업목적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구제 강화 및 노사 상생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해당조례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사업) 김포시 노동권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 노동자 권익·생활 편의 증진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업 3. 노동 관련 법률상담 5. 노동 인식개선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31,679	26,666	0	0	26,666	-5,013	
국비	28,510	24,000			24,000	-4,510	
도비		0				0	
시비	3,169	2,666			2,666	-50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6,666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공인노무사 인건비 - 인건비(노무사) : 2,740,000원*1명*7.5월 - 사회보험료 : 20,550,000원*14%	= 20,550 = 2,877	
	201-01 사무관리비	· 교육용품 구입 및 교재 제작비 : 3,079,000원	= 3,079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노동교육 참석자 다과비 : 2,000원*80명	= 160	

□ 예산요구 사유

- 다양한 노동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사업자와 근로자에게 전문적·체계적인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반영
일자	2025.11.	-	-	-	-	-	-	-	-	-	2026.3.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2. : 공모 신청 및 선정
- 2026. 4. : 기간제근로자(공인노무사) 채용 공고
- 2026. 5. ~ 12. : 사업추진(노동법률 상담 및 권리구제, 맞춤형 노동법 교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4	
2025	- 2025. 1. ~ 12. : 노무상담(613건), 권리구제(22건), 노무컨설팅(19건), 노동법교육(3회)
2026	- 2026. 2. : 공모 선정 - 2026. 4. : 기간제근로자(공인노무사) 채용 공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31,679	30,505	-	1,174	
2026	16,800	-	-	16,800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신영옥	담당자	행정7급 오선미	전화	2275
-----	--------	-------------	-----	----------	----	------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영세·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 154명		
사업목적	노동자의 건강 증진 및 산업재해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
	해당조례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30,800	0	0	30,800	30,800	
국비		21,350			21,350	21,350	
도비		0				0	
시비		9,450			9,450	9,4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800	
영세·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노동자 건강검진비 지원 : 200,000원*154명	= 30,800	

□ 예산요구 사유

- 영세·소규모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건강 검진비 부담 완화를 통한 노동자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고용노동부 「2026년 취약노동자 일터개선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3. 5. :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6. 4. ~ 2026. 5.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
- 2026. 6. ~ 2026. 11. : 대상자 건강검진 수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2026. 12. : 건강검진비 정산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2026	- 2026. 3. 23. : 검진병원 업무협약 체결(3개소) - 2026. 4. 2. : 참여자 모집 공고 - 2026. 4. 13. ~ 현재 : 참여자 신청 접수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0,675	-	-	10,675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장 신영옥	담당자	행정7급 장예은	전화	2276
-----	--------	-------------	-----	----------	----	------

공항소음피해지역 일자리 지원사업(한국공항공사 공모사업)

사업기간	2026. 7.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소음대책(인근)지역 일자리박람회 운영(40여개 기업 및 800여명 구직자)		
사업목적	현장중심의 면접기회와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구인기업·구직자 간 실질적 매칭 지원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조의2(채용박람회등의 개최) ① 고용노동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업안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박람회 기타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2조의2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 5.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85,000	0	0	85,000	8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5,000			85,000	8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85,000	
공항소음피해 지역 일자리 지원사업	201-02 공공운영비	· 일자리박람회 행사운영 보험료 : 1,000,000원	= 1,000	
	201-03 행사운영비	· 일자리박람회 운영비	= 80,000	
		- 행사장 설치비 : 49,500,000원	= 49,500	
- 홍보비(포스터, 현수막, 홍보물품 등) : 14,000,000원		= 14,000		
	- 운영비(인건비, 행사운영 물품구입 등) : 16,500,000원	= 16,500		
301-11 행사실비지원금	· 일자리박람회 운영 급·간식비 등 : 4,000,000원	= 4,000		

□ 예산요구 사유

- 일자리박람회 개최를 통한 구직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정보 접근성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한국공항공사 사업비 전액 지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기간제 근로자채용 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21. :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 공모사업 신청
- 2026. 2. 27. : 1차 서류 심의 선정
- 2026. 3. 13. : 2차 비대면 심의
- 2026. 3. 16. : 공모사업 최종선정
- 2026. 4. 8. : 협약체결(김포시↔한국공항공사)
- 2026. 7. : 사업진행
- 2026. 10. : 일자리박람회 개최
- 2026.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공모사업 선정(8월) - 예산 이월
2025	- 공모사업 시행(채용박람회 개최) - 4.23.(수), 사우동(시민회관), 25개 구인기업 및 800여 명 구직자 참여, 면접인원 380명 / 74명 취업
2026	- 공모사업 선정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88,000	-	88,000	-	
2025	88,000	86,355	-	1,645	
2026	-	-	-	-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사업팀장 이은화	담당자	행정7급 홍선영	전화	2261
-----	--------	-------------	-----	----------	----	------

청년성장프로젝트(성립전)

사업기간	2026. 3. ~ 2026.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19~39세 청년		
사업목적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친화적 인프라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유도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제8조의4
	해당조례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은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참여확대) ②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청년의 고용촉진 및 일자리 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촉진의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일자리를 위한 청년의 적성 탐색 및 직무능력의 개발을 위한 특성화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제12조, 제14조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57,500	52,500	0	0	52,500	-5,000	
국비	46,000	42,000			42,000	-4,000	
도비		0				0	
시비	11,500	10,500			10,500	-1,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2,500	
청년성장 프로젝트	101-0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 기본급: 11,730원*8시간*1명*168일 = 15,765,120원 - 유급휴일수당: 11,730원*8시간*46일 = 4,316,640원 - 명절휴가비: 500,000원 - 4대보험료: 20,581,760원*14% = 2,881,446원 - 출장비: 20,000원(4시간 이상)*50회 = 1,000,000원	= 24,464	
	201-01 사무관리비	· 홍보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14,436,000원	= 14,436	
	301-14 기타보상금	· 프로그램 강사비: 13,600,000원	= 13,600	

□ 예산요구 사유

-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심리적 회복 지원으로 취업 경쟁력 극대화 및 안정적 사회 안착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 공모 신청
- 2026. 2. : 공모 선정 통보
- 2026. 3. : 국고보조금 교부
- 2026. 4.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 2026. 5 ~ 12. : 사업 추진(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및 상담 운영)
- 2027. 1. : 사업 정산 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2025	- 22개 프로그램 운영(65회차, 688명 참여)
2026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57,500	57,231	-	269	
2026	21,000	498	-	20,502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일자리정책과	청년정책팀장 임지숙	담당자	행정7급 배지현	전화	5888
-----	--------	------------	-----	----------	----	------

복지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복지정책과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성립전)

사업기간	2026. 4.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 관내
사업규모	월 60가구(600회)		
사업목적	고립가구 안부 확인 및 물품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9조의2(위기가구의 발굴) ① 보장기관의 장은 누락된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7,500	0	0	7,500	7,500	
국비		3,750			3,750	3,750	
도비		0				0	
시비		3,750			3,750	3,75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500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서비스 : 5,000원*60명*10회	= 3,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안부살핌 생물품(꾸러미) : 7,500원*60명*10회	= 4,500	

□ 예산요구 사유

- 고립 위험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위기상황 조기 발견을 통해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 예산증감 사유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신규 사업 추진
- 경기도 복지사업과-6344(2026.03.09.)호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2. : 행정안전부 주관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공모 신청
- 2026. 03. :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선정
- 2026. 04. ~ 2026. 12.: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 추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2,625	-	-	2,625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장 정진우	담당자	사회복지7급 윤진	전화	2635
-----	-------	------------	-----	-----------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생활보장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성립전)

사업기간	2026. 4. 1. ~ 2026. 9. 30.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38,405명		
사업목적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33,085,144	0	0	33,085,144	33,085,144	
국비		26,468,114			26,468,114	26,468,114	
도비		3,308,515			3,308,515	3,308,515	
시비		3,308,515			3,308,515	3,308,515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3,085,144	
고유가 피해지원금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소계	= 176,204	
		· 기간제근로자 보수		
		- 인건비 : 11,730원*8시간*35명*36일	= 118,239	
		11,730원*8시간*14명*12일	= 15,765	
	11,730원*8시간*2명*109일	≡ 20,466		
- 4대보험료 : 154,470,000원*14.07%	≡ 21,734			
	201-01 사무관리비	소계	= 113,560	
		· 행정장비 임차료 : 25,000,000원	= 25,000	
		· 선불카드 수수료(발행비용) 등 : 2,000원*40,000장	= 80,000	
		· 홍보비 등 : 8,560,000원	= 8,560	
	201-02 공공운영비	· 우편요금 등 : 5,000,000원	= 5,000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재원)	· 고유가 피해지원금 : (450,000원*2,549명) + (550,000원*17,906명) + (100,000원*217,950명)	≡ 32,790,380	

□ 예산요구 사유

- 고유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소비 촉진
-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중 시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편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13.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통보 (도 복지정책과-7878호)
- 2026. 4. 15.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사업지침 배부
- 2026. 4. 21. :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운영 개시
- 2026. 4. 27. ~ 5. 8.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 2026. 5. 18. ~ 7. 3.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대상자 20,455명 지급중 [지역사랑상품권(김포페이) 3,000,000천원 예탁금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3,351,962	3,000,000	-	10,351,962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6급 배정민	전화	3011
-----	-------	--------------------	-----	------------	----	------

고유가 피해지원금(자체)

사업기간	2026. 4. 1. ~ 2026. 9. 30.	사업위치	관내
사업규모	238,405명		
사업목적	중동전쟁발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제1항
	해당조례	김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제1항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4,320	0	0	4,320	4,32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320			4,320	4,32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320	
고유가 피해지원금 (자체)	201-01 사무관리비	· 매식비 : 9,000원*15일*8명*4개월	= 4,320	

예산요구 사유

-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운영기간(4.27 ~ 8.31)중 이의신청 심의 등 초과근무에 따른 매식비 지원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13. :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 통보 (도 복지정책과-7878호)
- 2026. 4. 15.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사업지침 배부
- 2026. 4. 21. :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 운영 개시
- 2026. 4. 27. ~ 5. 8. :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 2026. 5. 18. ~ 7. 3.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	-	-	-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생활보장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TF팀장 박성식	담당자	사회복지6급 배정민	전화	3011
-----	-------	-----------------------	-----	------------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노인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2,712 가구			
사업목적	동절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도모			
사업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checked=""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노인복지법		제4조 제1항
	해당조례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5호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항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난방비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492,000	406,800	300,000	0	106,800	-85,200	
국비		0				0	
도비	147,600	122,040	90,000		32,040	-25,560	
시비	344,400	284,760	210,000		74,760	-59,64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6,800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지방재원)	· 난방비 지원 : 경정(50,000원*2,712가구*3월) -기정(50,000원*2,000가구*3월)	= 106,800	

□ 예산요구 사유

- 저소득 노인 개별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통해 생활안정 및 난방 취약계층 피해 최소화
- 동절기 난방비 지원 : 5개월 (1~3월분, 11~12월분은 하반기 내시 예정)

□ 예산증감 사유

- 2026년 노인월동난방비 등 지원 사업 도비 변경 내시[경기도 노인복지과-7499(2026.3.17.)호]
-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부족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
일자	2025.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01. ~ 2026. 02. : 1~2월 기초수급노인 개별가구에 난방비 지원(매월 20일)
- 2026. 03. : 성립전 예산 편성 및 3월분 난방비 지급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기초생활수급 노인 총 1,879가구 지원
2025	· 기초생활수급 노인 총 1,925가구 지원
2026	· 기초생활수급 노인 총 2,195가구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464,000	457,800	-	6,200	
2025	492,000	492,000	-	-	
2026	332,040	331,950	-	90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팀장 고명남	담당자	행정6급 박지희	전화	2204
-----	--------	------------	-----	----------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가족문화과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사업규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19명		
사업목적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checkbox"=""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11,400	0	0	11,400	11,400	
국비		0				0	
도비		11,400			11,400	11,4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400	
외국인주민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월빙보조비 : 19명*50,000원*12월 =	11,40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에게 매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29.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현황 제출(市→道)
- 2026. 2. 25. :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가내시 시달
- 2026. 3. 6. : 상반기 도비보조금 교부
- 2026. 3. 31. : 성립전예산 편성계획 수립
- 2026. 4. 30. : 처우개선비 지급(市→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5,700	-	-	5,700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김미화	담당자	행정7급 도우리	전화	5604
-----	-------	------------	-----	----------	----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양촌읍 황금로110번길 52
사업규모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19명		
사업목적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3/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4,560	0	0	4,560	4,560	
국비		0				0	
도비		4,560			4,560	4,56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560	
외국인주민지원 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	301-03 사회보장적수혜금 (지방재원)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 19명*20,000원*12월 =	4,560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에게 매일 처우개선비를 지급하여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2. 29. : 외국인주민지원센터 종사자 현황 제출(市→道)
- 2026. 2. 25. : 처우개선비 및 웰빙보조비 가내시 시달
- 2026. 3. 6. : 상반기 도비보조금 교부
- 2026. 3. 31. : 성립전예산 편성계획 수립
- 2026. 4. 30. : 웰빙보조비 지급(市→김포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
(1월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2,280	-	-	2,280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가족문화과	상호문화팀장 김미화	담당자	행정7급 도우리	전화	5604
-----	-------	------------	-----	----------	----	------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아동보육과

아동돌봄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성립전)

사업기간	2026. 3.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사회복지 종사자 27명			
사업목적	사회복지 종사자의 장기근속비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환경 조성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 제1호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1,350	0	0	1,350	1,350	
국비		0				0	
도비		1,350			1,350	1,35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350	
아동돌봄과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사회복지 종사자 : 50,000원*27명*1회	= 1,350	

□ 예산요구 사유

- 사회복지 종사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아동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질 제고
- '25년 12월 말 기준 현 소속 시설 5년 이상 장기 재직 종사자 총 27명 지급 (지역아동센터 24명, 다함께돌봄센터 2명, 그룹홈 1명)

□ 예산증감 사유

- 해당없음(신규사업)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4. : 사회복지 종사자 장기근속비 지급
- 2026. 12. : 보조금 정산보고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사회복지 종사자 27명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350	1,350	-	-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아동돌봄팀장 최정임	담당자	사회복지8급 이윤아	전화	5313
-----	-------	------------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29명		
사업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센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6,960	0	0	6,960	6,960	
국비		0				0	
도비		6,960			6,960	6,96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960	
육아종합지원 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웰빙보조비 : 20,000원*29명*12월	= 6,960	

□ 예산요구 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지원으로, 종사자 사기 진작을 통해 센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웰빙보조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12. : 매월 25일 웰빙보조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1~4월 웰빙보조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2,784	2,280	-	504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장 유인숙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원태	전화	5318
-----	-------	------------	-----	------------	----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성립전)

사업기간	2026. 1. 1. ~ 2026.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29명		
사업목적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센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사업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연례)반복 <input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input type="checkbox"/> 자체(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보조
집행계획	<input type="checkbox"/> 1/4분기 <input type="checkbox"/> 2/4분기 <input type="checkbox"/> 3/4분기 <input type="checkbox"/> 4/4분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
	해당조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17,400	0	0	17,400	17,400	
국비		0				0	
도비		17,400			17,400	17,400	
시비		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7,400	
육아종합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	· 처우개선비 : 50,000원*29명*12월	= 17,400	

□ 예산요구 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장기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센터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회의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 1.~ 12. : 매월 25일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 1~4월 처우개선비 지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6,090	5,700	-	390	4.24.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아동보육과	보육정책팀장 유인숙	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원태	전화	5318
-----	-------	------------	-----	------------	----	------

부 · 면 · 행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통진읍



통진읍 도사리 배수로 정비(성립전)

사업기간	2026. 4. 1. ~ 2026. 6. 30.	사업위치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218-3
사업규모	배수관로 설치 280m 등		
사업목적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관로 정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항
	법령 위임규정 제12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5년 최종예산액 (A)	2026년 예산액			2회추경 요구액 (E)	2025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	본예산 (C)	1회추경 (D)			
계	0	100,000	0	0	100,000	1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0			100,000	100,000	특교세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2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	
통진읍 도사리 배수로 정비	401-01 시설비	· 실시설계 : 10,000,000원 · 배수관로 설치 : 250,000원 * 280m · 농로 포장 복구 : 20,000원 * 280m * 3m · 폐기물 처리 및 운반 등 : 3,200,000원	= 10,000 = 70,000 = 16,800 = 3,200	

□ 예산요구 사유

- 해당지역은 호우 시 빗물이 원활히 배수되지 못해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고 있음
- 신규 배수관로 매설을 통해 침수 피해를 해결하고 마을 주민 통행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배수관로 매설을 통해 배수 기능을 개선하여 농로 침수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음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사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기간제근로자채용사전심사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예정	-	-	-	-	-	-	-	-	-	-
일자	2026.11.	-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6.04.~05. : 실시설계 착수 및 준공
- 2026.05.~06.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6. 4. 24.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4	-
2025	-
2026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4	-	-	-	-	
2025	-	-	-	-	
2026	100,000	-	-	100,000	4.24.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통진읍	사업규모	배수관로 설치 280m	2회추경 요구액 (천원)	100,000
부기명 (세부사업)	통진읍 도사리 배수로 정비	사업위치	통진읍 도사리 218-3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통진읍	산업개발팀장 박철욱	담당자	시설8급 조세륜	전화	3242
-----	-----	------------	-----	----------	----	------